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한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01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 지자체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군은 2월말까지 사도지사에게, 사도지사는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지역사회보장지표' 를 시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의무
 -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2016년 주요 변경사항

- 2013년 수립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과 연계성 반영
- 내용의 체계 변경 : (당초)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
(변경) 목표-분야별 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
- 기존 성과지표를 대체하여 복지부 제시 '지역사회보장지표' 우선 활용
- (신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포함
- (신설)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방안' 포함

• 지역사회보장지표

- 2015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돌봄·보호안정 등 10개 사회보장 분야별로 구분, 총 226개 지역사회보장지표(안)을 개발
- '1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지표(226개) 중 지역사회보장 여건지표(38개)와 핵심지표(96개) 위주로 우선 도입
- 현재 지역에서 생산 중인 지표가 30%,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산출 가능한 지표 50%, 신규조사 필요 지표가 20%로 구성

• 경기도는 시군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시군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및 지원하는 역할을 '광역도' 에 부여함으로써 직접 사업보다는 31개 시군을 지원 및 평가하는 역할 요구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 경기도가 시군에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02 2016년 반영해야 할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주요 내용

- 여건지표 : 36개
 -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표현하는 지표
 - 어린이집 정원, 지원 아동수, 단위인구당 학교 수 등 현재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
- 영향지표 : 19개
 - 정책 중요도가 높고 지역별 변화를 추적, 시계열적 측정의 필요성이 높은 지표
 -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 상대적 빈곤율 등 성과 지향의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지표

영역	여건 지표(36개)	영역	영향 지표명(19)	
돌봄 (아동)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돌봄 (아동)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영유아 인구 천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보호 안전	학대/폭력 사례수	
	취학전 아동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재학대 판정률
	초등 돌봄교실 설치 학급수 및 이용 아동수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돌봄 (성인)	건강 안전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설치개소수, 지원액)				
돌봄 (성인)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건강	기대 여명	
노인돌봄 욕구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보호 안전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교육	평생학습 참여율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 총 정원 수	고용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		
건강	만성질환자 비율		고용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교육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		주거	강제이동 비율
	단위 인구당 학교 수	환경		
고용	특수교육대상자 수		환경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고용률	환경		
주거	장애인고용률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실업률	빈곤인구 감소율		
주거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상대적 빈곤율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소득 5분위 배율		
문화 여가	주택보급률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소득 5분위 배율
	지가 점유율			
문화 여가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소득 5분위 배율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관 수(신규조사 필요)			
환경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소득 5분위 배율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좌석 유무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소득 5분위 배율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주민 1인당 녹지조성 면적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소득 5분위 배율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비율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차상위 수급자 비율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소득 5분위 배율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소득 5분위 배율	

- ‘지역사회보장지표’ 에 대한 논의는 공청회 1회 뿐으로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안된 상황에서 관련 통계를 수집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지표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수준을 관리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03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사군의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조정을 권고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복지거버넌스를 구축
 - 복지거버넌스를 통해 '16년 경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15년 시군 시행계획 평가 수행
- 지역사회보장 지표와 2016년 경기복지재단이 진행 중인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지표를 연계, 관리하여 ‘경기도 복지 기준선=지역사회보장 수준’ 유도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정부는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복지인력 확충·민관협력 기반 마련과 함께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을 도출하고 이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

- 정부는 지난 '14년 5월부터 1년6개월 간 전국 15개 읍면동 대상으로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실시. 주요성과는 사각지대 발굴 6.2배, 방문상담 4.3배, 서비스 연계 3.4배 등임
 - 정부는 본격적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현행 주민센터 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오는 '18년까지 (가칭)행정복지센터로 전면 전환 계획(2016년 전환 목표: 700개)
 - 2015년 12월 현재 전국 2,796개 읍면동 중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을 밝힌 곳은 총 877곳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164곳)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89곳), 서울(86곳), 부산(81곳) 등임

〈표 1〉 지자체별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전	전북	광주	전남
전체(A)	423	147	540	179	12	78	196	95	163
전환(B)	86	33	164	89	7	52	59	25	48
비중(B/A)	20.3	22.4	30.4	49.7	58.3	66.7	30.1	26.3	29.4
	강원	충북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제주	전국
전체(A)	112	153	74	132	56	208	185	43	2,796
전환(B)	36	25	34	60	10	81	54	14	877
비중(B/A)	32.1	16.3	45.9	45.5	17.9	38.9	29.2	32.6	31.4

* 단위: 개, %

- 도내 18개 시·군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권역형 119개·기본형 45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선도적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환을 위해 시·군 지원 계획 수립
 - 경기도는 선도적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道복지전담팀 설치(복지허브화 컨설팅·표준 업무매뉴얼 작성),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비 지원(1개소 당 6백만원 예정), 복지전담팀장 전문 교육(교육기관: 경기복지재단, 민간전문가 배치(417명 규모) 등의 지원계획 수립
 - 도는 올 3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비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5월 중 복지전담팀을 통해 관련 컨설팅 및 표준매뉴얼을 마련 계획

〈그림 1〉 2016년 경기도 복지허브화 추진일정



* 도 발표자료 (2016.2.23.)

-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성패는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와 실질적 상호지원에 있음
 - 도는 (일반 구에)1개구 당 2개 읍면동허브화 설치, (시·군에) 1개 시·군당 인구 규모에 따라 2~4개의 읍면동허브화 설치 및 신규채용된 사회복지담당인력의 읍면동 필수 배치를 요청
 - 시·군의 경우 복지전담인력 수급·구조개편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등 실질적 예산부담에 대한 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양자 간 상호협력 필요

03 FACT CHECK

장애인보호작업장, 임금보다 직업재활이 더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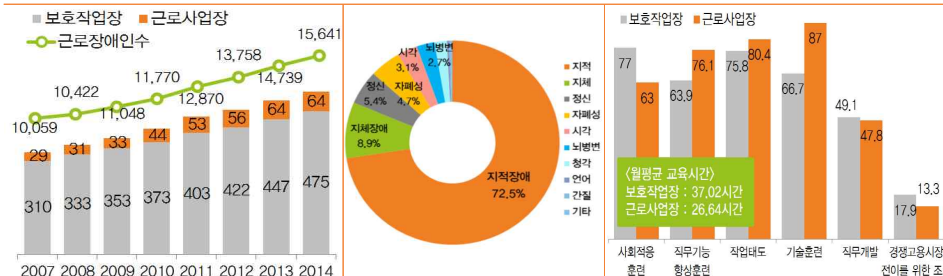
- 중증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작업장이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전락, 장애인들은 뒤떨어진 근로환경과 월 10만원 불과한 낮은 처우에 신음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함(한국일보, '16. 2.17. 기사)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직업적응훈련 및 작업훈련 등을 통한 수익 창출과 일상생활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증진이 목적
 - 근로사업장은 근로장애인의 60%이상이 3급 이상, 보호작업장은 80%이상이 3급 이상으로 규정*되어 참여장애인의 중증비율이 매우 높음
 - 실제 보호작업장 근로자의 81.4%(2014년 기준)가 중증의 지적·자폐성로 구성되어 보호작업장은 고용측면 외에 복지성이 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상기 기사는 보호작업장의 고용적 측면의 만을 강조하여 직업적 기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등의 재활프로그램 제공 기능의 복지성효과를 간과
 - 근로장애인의 장애특성으로 인해 고용적 측면의 임금보다는 재활프로그램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으로 구분되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2016년부터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변경됨
- 보호작업장은 성인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 임금향상을 위한 생산성 증진은 단순임가공보다 생산설비투자과 사무용품 위주 외 다양한 아이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

04 통계로 보는 복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이용인원 근로장애인 장애유형 근로장애인 대상 프로그램/교육시간



*단위 : 개소, 명,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14년 기준 전국 539개소이며, 근로장애인은 15,641명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475개소(12,920명),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64개소(2,721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122개소(3,877명)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두번째인 85개소(2,525명)가 설치됨
- 근로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72.5%로 가장 많고, 지체 8.9%, 정신 5.4% 순임
- 직업재활시설의 작업활동·재활프로그램*은 보호작업장의 경우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한다는 답변이 77%로 가장 많았고, 근로사업장은 '기술훈련' 실시가 87%로 가장 많음
 -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에 대한 월평균 교육시간은 37.02시간(1일 평균 1.85시간)으로 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